

복무기간연장명령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군번	
연장 근무기관·지역			
연장 근무기간			
연장 사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익법무관으로서 위와 같이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연장 근무할 것을 명합니다.

년월일

법무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